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859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859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747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정승현

변론종결 2024. 11. 7.

판결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7471 판결

주문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C 대 3,914.1㎡ 중 1,439.69/3,914.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3. 3. 11. 접수 제252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채권신고”를 “채권신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박미리, 판사 안동철

별지